

직장 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 모두에 대해 직원 상호간, 고객간, 협력업체 및 경쟁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임직원 윤리규범을 정하고 직장 윤리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사업장의 임직원 및 협력업체, 사내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협력업체에는 기아자동차와 각종 거래를 갖는 개인, 법인, 에이전트, 중개인, 합작회사가 포함된다. 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조직】

1. 본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별도의 직장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직장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 운영절차는 징계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주관팀】

본 규정 집행의 주관팀은 본사 인사팀 및 각 지역 인사 담당팀으로 한다.

제5조 【직장윤리규범 정의】

회사의 비전과 경영방침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개인의 품위 및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금지와 자부심으로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한 도덕적 기준

제6조 【관련규정 적용】

본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리의 처리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본 규정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직장윤리 규범

제7조 【직장윤리 기본규범】

1.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주어진 직무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 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보호한다.
4. 관행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5. 자기분야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품위 있게 행동 한다.

제8조 【윤리규범 준수사항】

임직원은 직장윤리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직장문화를 지향하며 오해 받지 않는 행동을 통하여 신뢰를 형성한다.

- 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한국 자동차산업을 지킨다는 자세로 매사에 임한다.
- 다. 협력업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청탁 등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라. 직무관련 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
- 마.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의하여 추진한다.
- 바. 사내 직원간 부당한 업무요구 및 직권을 이용한 청탁행위를 배격한다.
- 사. 국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 아. 기타 상기 제7조의 규범을 벗어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제9조 【윤리규범 위반사항 신고】

1. 임직원은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3자로부터 그러한 사항을 접수한 때는 반드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직장윤리위반신고센터를 주관 팀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2. 회사는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3.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해 그 사실을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자는 사내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윤리규범위반자에 대한 처리】

1.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부서(팀) 또는 감사실은 이 사실을 관련서류 및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관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주관팀은 통보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한 처리여부를 결정한다.
3. 연루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한다.
4. 협력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적의 조치를 의뢰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협력업체에 대해 변상조치를 한다.

제11조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

1. 윤리규범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사내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위원회규정에 없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주요 징계대상 및 징계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징계대상

- ①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직권을 이용한 금품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등
- ② 사내직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직권을 이용한 금품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등

나. 징계내용

- ①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시 : 미신고자, 해당직원 징계 조치, 협력업체 거래 중단
(재발 시 영구 제명)
- ② 직권 이용 금품요구 시 : 해당직원 징계 조치
- ③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시 : 징계위원회 심의 후 징계여부 결정

제4장 직장윤리위원회

제12조 【윤리위원회 구성】

1. 직장윤리위원회는 1심 및 재심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사내 징계위원회와 동일하다.
2. 직장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징계위원회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윤리위원회 개최】

1. 직장윤리 관련 비리사실이 발생한 경우 감사실 또는 해당부서는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 위원회 간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각 위원회 간사는 통보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 소집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 【윤리위원회 운영】

1. 직장윤리에 관한 포상과 징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우선 심의하고 포상은 포상위원회를 속개하여 심의 결정한다.
2. 직장윤리관련 징계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은 징계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사후관리】

직장윤리와 관련하여 본부 단위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적발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